



제 439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검 토 보 고

〈 법률의 목적 추가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9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3.
3. 회 부 일 : 2026.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강화하며----- ----- ----- -----.

나. 검토의견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기반 약화, 고등교육 수요의 다변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인재 양성 체계 전환 필요성 등 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계획 하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7조의2를 신설(2021. 9.)하였음.¹⁾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 기본계획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핵심 계획이나, 실제 재정 운용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재정지원 정책과 재원 배분 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은 정책 집행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운용과 정책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교

1)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육 재정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개정안을 통해 재정지원의 계획(정책)과 실행(예산 운용)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면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고등교육 재정의 지원을 통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 주체와 세입·세출, 전입금 및 차입금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재원 관리 및 운용 체계”를 규율하는 재정법적 성격이 강함.

이에 반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정책적·계획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임.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목적 규정에 특정 정책계획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성격이 다른 사항을 혼재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운용의 주체와 세입·세출, 전입금과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추

진은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